

1. 개정이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오수처리시설 준공 후 방류수수질검사는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것을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 제조제품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검토 강화(안 제27조제4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에 대한 검토 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한국환경공단 의견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처리용량에 관계 없이 모든 시설에 대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추가로 지정

나.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시 방류수수질검사 대상 확대(안 제32조제1항, 제4항·제5항)

오수처리시설 제조제품 준공검사 후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방류수수질검사를 하고 있어 성능이 미달되는 제품 설치 시 초기 개선을 위해 처리용량에 관계 없이 모든 시설에 대해 방류

수수질검사를 하고, 전문기관에 기술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68조, 별지 제39호의2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이 기록해야 할 운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효과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우므로 시설운영에 있어 중요사항(가동시간, 오수배출량, 약품투입량 등)을 운영일지에 기록하고, 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함

라. 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태독성 관리 강화(안 별표 1)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일부업종(35개)에서 폐수배출시설 전(全)업종(82개)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업종 구분 없이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마. 성능검사의 방법 개선(안 별표 13)

사후검사 기간을 3개월로 하고, 영 별표 6 비고 제3호 각목에 따른 대표시설 외의 시설은 대표시설의 성능검사 결과와 서면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시설의 구조도 및 처리효율 산출자료 등을 심사받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전단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4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영 별표 1”을 각각 “영
별표 1의2”로 한다.

제13조의5 중 “영 별표 1의2”를 “영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등록신청서에 영 별표 1의3”을 “등록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4”로 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변경신고서”를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조의6 중 “영 별표 1의4”를 “영 별표 1의5”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1일 50세제곱미터 이상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

원”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시설에 대해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보건환경연구원

제6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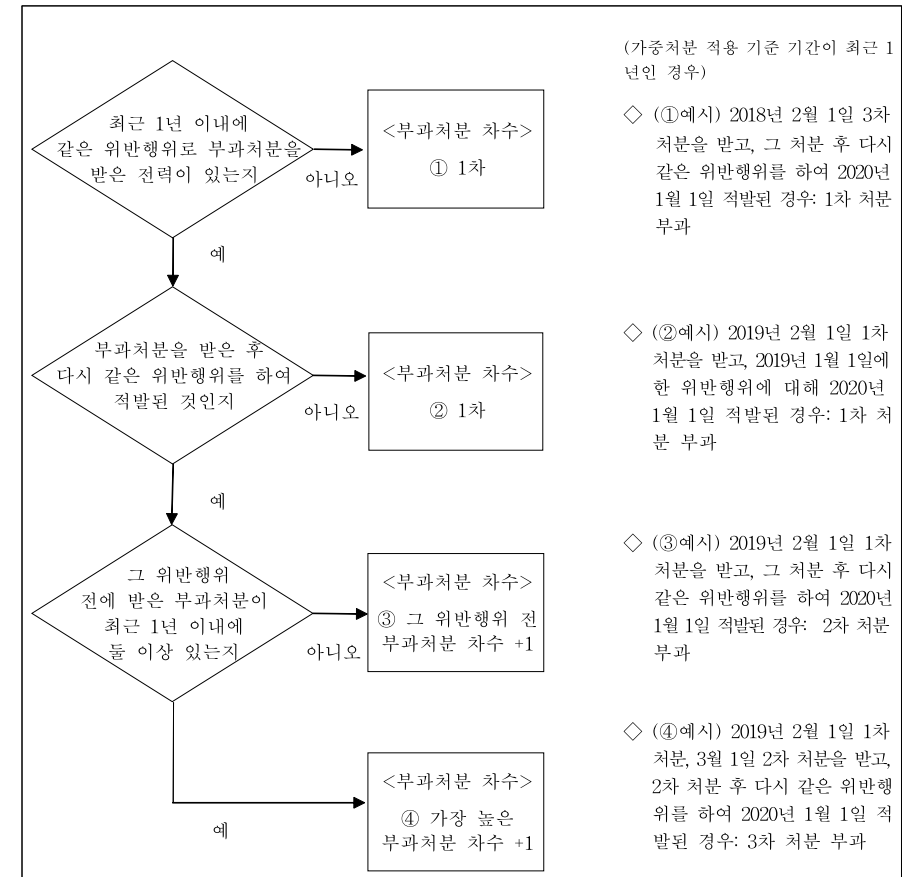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가동시간, 오수배출량, 약품투입량,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매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기록·보존은 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비고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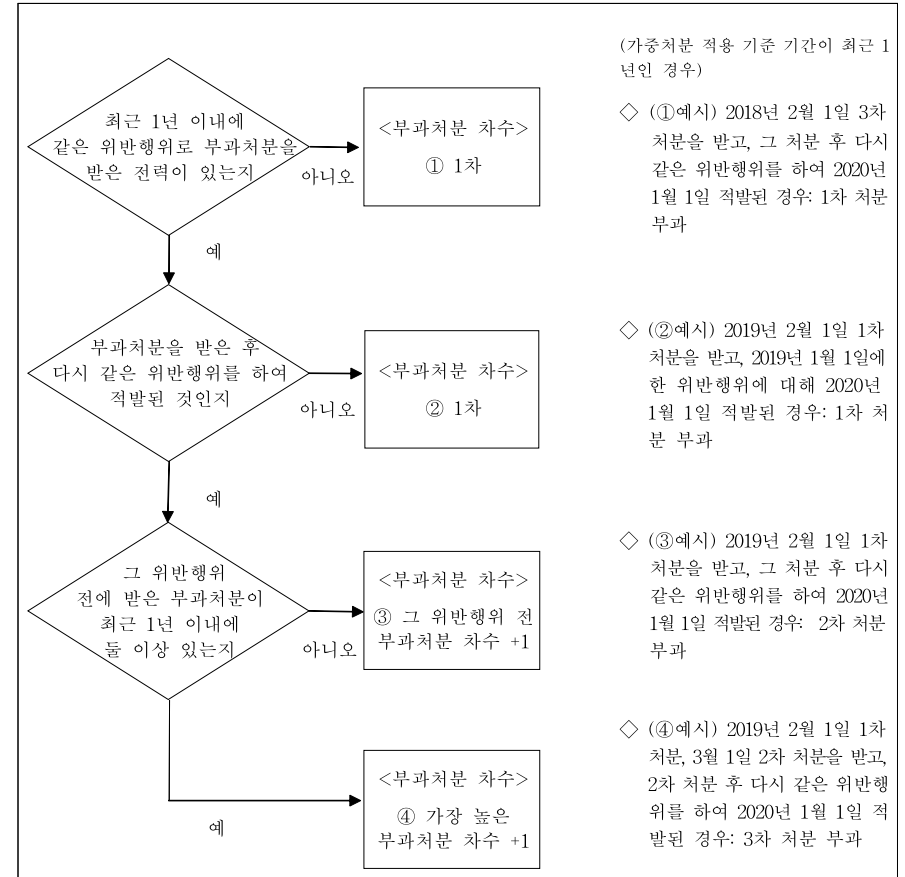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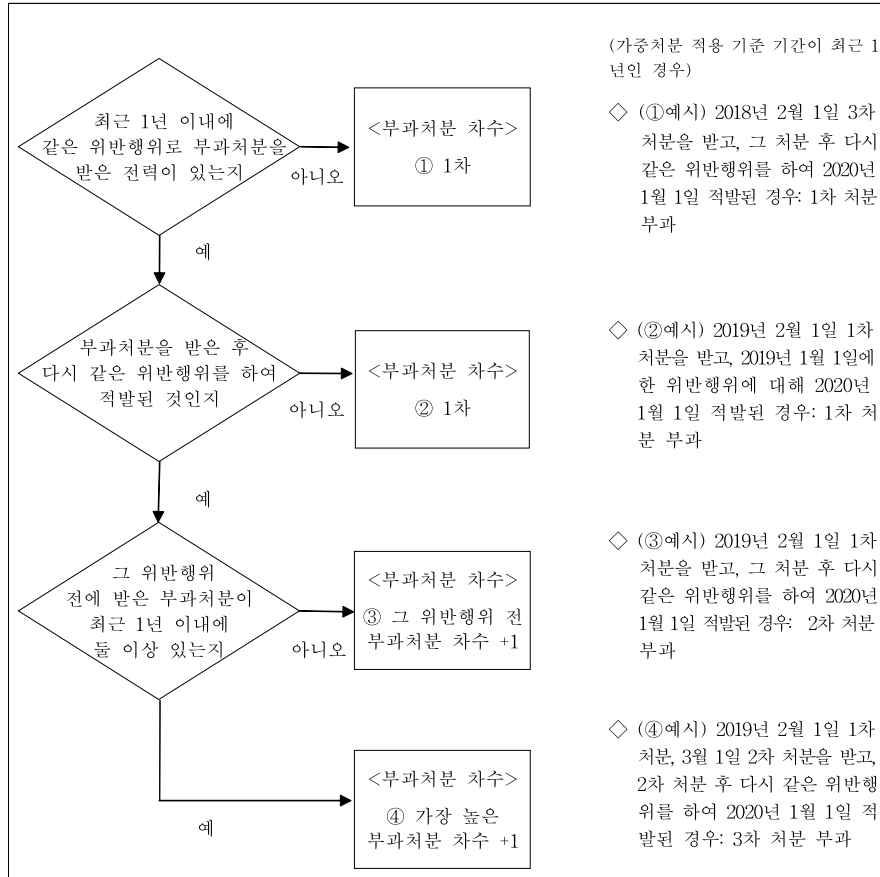
별표 5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별표 5의4 제2호마목1) 중 “영 별표 1의4”를 “영 별표 1의5”로 하고, 같은 호 마목2) 중 “영 별표 1의4”를 “영 별표 1의5”로 하며,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별표 10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별표 13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기간

가) 사전검사 : 성능검사를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의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된 날부터 6개월간 실시하되,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50일 이상

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사후검사 : 성능검사를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의 BO
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된 날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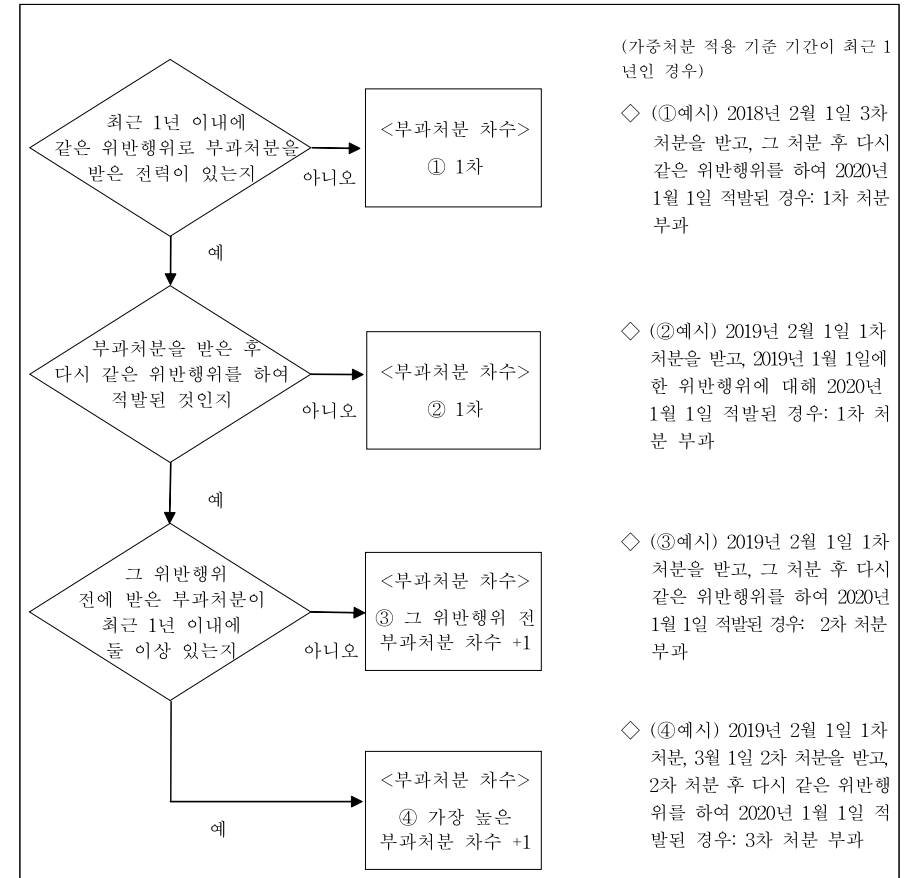
별표 13 제1호마목 중 “영 별표 6 비고 제2호”를 “영 별표 6 비고 제3호”
로, 같은 목 중 “처리공법·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같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을 “같은 별표 비고 제3호 각목에 따른 대표 오수처리시설의”로 한
다.

별표 15 제2호나목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검사	법 제54조	영업정지	등록취소
를 받지 않은 경우	제1항제13 호	6개월	

별표 15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별표 16 나목 중 “화학분석기능사로서”를 “화학분석기능사 자격 취득
전·후”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해당”을 “졸업 전·후 해당”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해당”을 “졸업 전·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같은 법 시
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이 초급 이상인 경우에

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별표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기술인력의 자격분야와 같은 종류인 경우로 한정하고,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이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분야가 환경이고 전문분야가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신청(신고)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을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로 하고,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라목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중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을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

별지 제4호의7서식 앞쪽 신청(신고)인 제출서류란 제1호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3을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4”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오수처리시설 [] 사전 [] 성능검사 신청서
[] 정화조 [] 사후 [] 재질검사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시설내용	처리방법			규격				
	설계 처리효율	구분	BOD (mg/L)	SS (mg/L)	T-N (mg/L)	T-P (mg/L)	총대장균수 (개/ml)	
		유입수					-	
		처리수						
	처리용량 (처리대상인원)	㎡/일(명용)			검사희망일		년 월 일	
	재질 및 제조방법							
	설치예정장소							

등록관청 또는 등록예정관청			
용도	[] 제조등록 [] 준공검사	제조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설계·시공업체명(대표자): 소재지:

「하수도법」 제5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처리방법 설명서 1부 2. 구조도 및 처리용량 산출도서 각 1부 3. 설계 처리효율 산출자료(성능검사에만 해당함) 1부	수수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유의사항

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가. 성능검사 : 「물관리기술폭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
나. 재질검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장

일자	기온(℃)
----	-------

1. 단위공정별 점검사항

단위공정 (조정가능)	점검사항 (조정가능)	운전현황
유량조정조	- 유량조정조 수위 및 월류 상태 확인 - 스컴 및 협잡물 퇴적 상태 확인 - 설비 가동 상태 및 이상 소음, 진동 확인	
무산소·혐기조	- 교반기 가동상태 및 이상 소음, 진동 확인 - 이송밸브 이상유무 확인	
폭기조	- 미생물 활성 상태 및 폭기 상태 확인 - 미생물의 냄새, 색깔 확인	
침전조	- 월류수 상태 확인 - 내부 슬러지 퇴적 상태 확인 - 청결 상태 확인	
기계장치	- 제어판넬 내부 장치 동작상태 확인 - 브로워 이상 소음 및 진동, 누기 확인	

2. 유량

직전 유량계 적산지침(m³)	현재 유량계 적산지침(m³)	유량 측정일 간격(일)	일평균 유량(m³/일)

2. 폭기조 운전상태

수온(℃)	DO(mg/L)	MLSS(mg/L)	SVI(%)

3. 슬러지의 발생량 및 처리량

슬러지발생량(m³)	처리량(m³)	보관량(m³)	함수율(%)

※ 슬러지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장소:

※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소명:

4. 전력사용량

직전 적산전력계 지침 (kWh)	현재 적산전력계 지침 (kWh)	전력 측정일 간격 (일)	일평균 사용량 (kWh)	하수 1m³당 소모전력량 (kWh/m³/일)

5. 약품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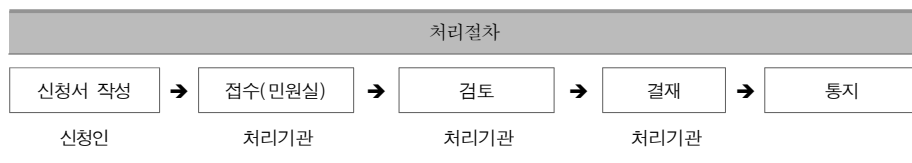
약품명	구입량(kg)	약품 소모량(kg)	잔량(kg)

6. 수질오염물질 측정내용

항 목	pH	BOD ⁵ (mg/L)	SS (mg/L)	COD (mg/L)	T-N (mg/L)	T-P (mg/L)
구 분						
유입수						
방류수						

※ 관리업자가 분석하는 경우 분석자명:

※ 분석을 위탁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소명: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① ----- ----- ----- ----- ----- <u>영 별표 1의2</u> ----- -----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제13조의3(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①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신고서에 관리대행업 신고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4.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4. 영 별표 1의2-----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4.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4. 영 별표 1의2----- -----
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① ----- ----- ----- ----- ----- ----- -- 영 별표 1의2-----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5(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관리대행업을 하는 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5(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영 별표 1의3 ----- ----- ----- ----- ----- ----- ----- -----.

